

환경부 고시 제2012-205호

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일부개정 고시

2012년 10월 17일 / 환경부장관



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「배출가스 중 연속자동측정방법」 중 굴뚝연속자동측정기기의 기능(ES 01801.1a), 굴뚝연속자동측정기기의 기능 - 디지털통신방식(ES 01801.2) 및 부록 5 굴뚝자동측정기기 디지털통신방식 기반 굴뚝자동감시체계 구성(ES 01814.1)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〈 부 칙 〉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디지털통신방식 측정기기에 대한 적용례 등) “굴뚝연속자동측정기기의 기능 - 디지털 통신방식” 및 “부록 5 굴뚝자동측정기기 디지털통신방식 기반 굴뚝자동감시체계 구성” 개정규정은 먼지, 유량, 산소 측정기기의 경우 이 고시 시행 후 1년(그 외의 가스상 오염물질 측정기기의 경우 이 고시 시행 후 2년)이 경과한 날부터 교체 또는 신규로 부착하는 경우에 적용하고,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부착되어 있는 측정기기의 경우 이 고시 시행 후 5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며, 그 적용일과 동시에 각각의 측정기기에 대한 “굴뚝연속자동측정기기의 기능 - 아날로그 통신방식” 개정규정은 폐지한다.

환경부 공고 제2012-469호

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

2012년 10월 19일 / 환경부장관

1. 제안이유

환경유해인자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상이 되는 일부 개발사업 등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 등의 평가 항목에 환경유해인자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야 하는 평가대상 및 방법에 대한 제도의 유효기간을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건강영향 검토·평가대상 및 방법 등에 대한 유효기간 3년 연장

- 1) 국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각종 개발사업 등에 대하여 환경유해인자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대상 및 방법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음
- 2)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건강영향을 지속적으로 검토·평가하여 국민의 건강 및 삶의 질 제고 필요

환경부 공고 제2012-485호

포획 야생동물 확인표지에 관한 규정 제정안



2012년 10월 9일 / 환경부장관

1. 제안이유

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30조제2항 및 제63조제3항에 따라 “포획 야생동물확인표지의 제작·발급, 부착방법, 사용 후 반환절차”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기 위함

2. 주요내용

확인표지의 제작·발급, 부착방법, 사용 후 반환절차에 관한 내용

- (위탁자) 확인표지 제작, 발급·판매 및 실적 보고서 작성·제출
- (지자체) 확인표지 발급·반환 및 실적 보고서 작성·제출
- [기 타] 확인표지 위조방지, 판매원칙, 부착방법 등